성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
제출년월일 : 2002. 7. .
제 출 자 : 성주군수 (인)

1. 제안이유

상위법인 주차장법에서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용의 형평성유지와 업무 추진에 원할을 기하고자함

2. 주요골자

○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준농림지역안의 적용 범위 설정**(안 제15조)**

- 성주군 전역의 준농림지역

단) 단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대상 건축물과 건축법 제9조에 신고대상 건축물에 한하며 축사 및 식물관련시설은 제외한다.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주차장법 제19조, 건축법 제8조, 제9조
나. 입법예고결과 : 붙임
다. 예산관련사항 : 해당없음
라. 신구조문대비표 : 붙임

성주군조례 제 호

성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

성주군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

제15조(부설주차장설치기준)①법 제19조 제1항에 의한 "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준농림지역안"의 적용 범위는 성주군 전역의 준농림지역으로 한다. 다만,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대상 건축물과 건축법 제9조의 신고대상 건축물에 한하며 축사 및 식물관련 시설은 제외한다.

②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영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【별표1】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부설주차장설치기준)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영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【별표1】을 준용한다.	제15조(부설주차장설치기준) ①법 제19조 제1항에 의한 "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준농림지역 안"의 적용범위는 성주군 전역의 준농림지역으로 한다. 다만,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대상 건축물과 건축법 제9조의 신고대상 건축물에 한하며 축사 및 식물관련 시설은 제외한다. ②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영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【별표1】을 준용한다.